

제395회 국회
(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3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2년4월19일(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상정된 안건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1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1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1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1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1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1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2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2

(00시15분 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83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224)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4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소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법무부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과거에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셨고,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최강욱 위원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법무실장을 거쳐서 법무부차관으로 근무하신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그간 소위 법조 3류이라고 하는 직역을 다 경험해 보신 편이셔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여쭙보겠습니다.

형사사법제도라는 것이 인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사하고 연계되어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형사사법제도가 추구하는 인권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 법학계의 격언 중 하나가 ‘하온아홉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 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고,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최강욱 위원 자백의 임의성·보강법칙 이런 것들이 하위 법률에 규정되고, 헌법에도 주로 12조에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여러 기본권 보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형사소송 절차하고도 연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형법에 특별히 이렇게 신

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죽 나열되어 있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이런 상황들을 죽 보면 이게 다 수사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최강욱 위원 특히 강제수사를 가지고, 기본권 조항에 이게 들어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법률로 형사소송법이 있는 것은 수사, 특히 강제수사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어떤 신체 자유의 박탈의 위협,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험성 이것이 높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객관적 입장에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또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로 법률가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 이것이 영장제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그 제도 중의 하나로 당연히……

○최강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영장제도와 관련해서 법률가인 검사와 또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법관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렇다면 국가의 행정작용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를 행사하는 곳은 수사기관이고,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그럴 개연성이……

○최강욱 위원 그 수사기관이 범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특히 강제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률가가 개입해서 영장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 또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추정의 원칙하에서 철저하게 법률적으로 정제된 증거에 따라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형사사법제도를 발전시켜 온 인류 역사의 결과물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나 검찰의 고위 간부로 계신 분들에게 ‘검사는 본질적으로 인권옹호기관입니까, 인권침해기관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인권옹호기관이어야 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당연히 인권옹호기관이어야 됩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검사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사의 지위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고 느끼는 현상에서 계속 집중된 권한에 의한 폐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 형사사법체계에서, 특히 검찰제도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논의해 온 역사를 보면 적어도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김대중 정부 이후에는—검찰의 권한 남용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통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논의가 집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흐름으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위원** 계속 그런 흐름이 있었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최강욱 위원** 그래서 법원과의 관계에서 영장 실질심사제도, 공판중심주의 그다음에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그런 차원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강욱 위원** 그다음에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권한인 기소권과 인권옹호 직무를 행하는 공익의 대표자 또 객관의무를 구현해야 되는 사명과의 충돌이 생기는 지점 때문에 이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하고 분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논의되어 왔고 그런 흐름 속에서 사회적인 논의 기구나 국회의 입법이나 또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내세우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개선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그 평가는 제가 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수사 주체를 포함한 국가 권력기관의 타협과 논의의 결과가 현재까지의 법령으로 구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위원** 민주주의의 요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력은 절대 독점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큰 틀에서는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최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라는 일련의 형사 절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제도가 낡는 폐해 때문에 지금 여러 논의들이 있고 오늘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지금 1차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검사에게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남기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찰에게 수사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검찰은 책임자가 사퇴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 개혁의 방향을 저지해 왔고 그 흐름은 지금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때는 공동하여 대항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역사적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글쎄, 전통이라고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지난 시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 일들이 죽 진행되어 왔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결과물이 지금 차관님께서 스스로도 민망해 하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는 법무부 검찰국 입장이라고 하는 이 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면 장차관은 왜 있는 거고 정부조직은 왜 필요한 겁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한 이유가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마라,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민주적 통제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많은 분들이……

차관님도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차관직에 임명돼서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결과물이 법무부 검찰국 입장이라는 별도의 문건으로 검사들의 견해가 국회에 제출되고 법무부차관께서 장관과 국장의 견해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참고하라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시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고 현실이고, 다른 어떤 정부 조직이나 어떤 공무원 조직에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평가가 지나칩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평가는 위원님들이 각각

하시겠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의 모든 법 개정에서 주무부처의 실무자와 장차관의 의견이 수렴돼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또 이미 그런 장관의 입장과 우리 실무진의 입장이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찰국이나 대검의 입장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시고 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최강욱 위원 됐습니다.

여태 말씀드린 과정에서…… 지금의 국회 논의는 결국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과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국민기본권, 인권 보호에 친화적인 것으로 개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제, 공판중심주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런 것들은 국민 일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숙의 절차를 통해서, 그때도 여전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었지만 그것을 개선해 온 것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 발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권이 갖고 있는 문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이 낳았던 폐해, 자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성찰하지도 않는, 자기 범죄에 대한 훨씬 더 가혹한 처벌보다는 덮기에 급급한 검찰이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국민 일반에서 아주 극소수의 일부 국민들에게만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공감대 형성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최강욱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실질심사제나 공판중심주의나 이런 주제와 비교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각별하게 어려운 것이고 그간에 아무런 논의가 없이 느닷없이 튀어나온 거라서 지금 논의의 성숙도가 없고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고 다들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최강욱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내용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에 관해서는—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수사나 공소제기의 주체, 방법, 절차 등에 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나 형식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행정처장님이든 법무부차관님이든 경찰청 차장님이든 나와 계신 이유는 이 법안이 헌법재판소가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본질과 검사의 기본적인 지위와 이런 것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내 입장에서 지금 국민 법감정이 성숙됐다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논의가 많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입법기관의 판단에 부수되는 법률개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견해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떤 정합성이 있고 혹시 실무상 생길 수 있는 공백이나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맞습니다.

○최강욱 위원 정해진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별다른 위치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당신들의 의견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식의 태도는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수사판사라는 제도가 프랑스에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거기서는 판사가 수사권을 행사하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수사권을 어디선가 독점해서 다 행사해야 되고 기소권과 다 결합해서 행사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결합은 대한민국에서만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설계한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위원 여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생각하는 검사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이 여태까지 보여 왔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내사 단계에서부터,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또 피의자의 출석 요구에서부터 압수수색, 검증, 구속 또 집행, 공판, 항후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독점해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권한을 가진 의미로서의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은…… 세계적으로 다른 검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것을 수사라고 한다면 그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사실관계 정정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차수 변경까지 됐는데 저까지 이렇게 발언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위원회 직원들이 위원회 심사 활동을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팩트에 기반한 어떤 실수나 지적은 저희가 당연히 수용하고 성찰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지적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위원회 직원들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지금 발언들이 다 속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직원의 자존심이나 명예에

관련된 사항이고 또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감사하게도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법안, 형소법과 검찰청 개정안이 지난 4월 15일 날 11시경에 발의가 됐고요. 이게 의사국 의안과에서 접수를 하는데 형식적 요건이 맞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점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회부가 돼야 저희가 의견 조치가 가능합니다. 회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의견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회부되고 5시 35분에 관련 기관에 의견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하고 국회 간에 연결돼 있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있는 데 반해서 법원은 보안적인 이유로 저희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관례적으로 저희가 결재를 한 다음에 법원에는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15일 날 5시 35분에 발송을 정확히 했고요. 이것을 확인하신 시점이 4월 18일 날 8시 24분에 담당자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았다고 아까 법원 쪽에서 얘기하신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발언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법원행정처 차장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앞으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확인된 게 있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차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논쟁을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도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시지요.

내가……

○소위원장 박주민 또?

○유상범 위원 아니, 저거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끝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위원장님, 그 사실에 관해서 말씀할 기회를……

○소위원장 박주민 예,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우리 행정처에 접수된 시간이 오늘 아침 저는 9시 경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8시 24분으로 확인하셨다면 그게 맞

겠지요.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4월 22일까지 문서로 회신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그렇게만 안 돼 있고요.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이 두 가지 옵션을 드린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다음에 소위를 7시에 한다고 저희가 통지받은 시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차장님, 지금 이거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상범 위원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논쟁이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팩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다가 말씀 듣고……

○유상범 위원 진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유상범 위원 먼저 지금 저희가 심리하는 법안은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변경하는 정말 중차대한 법이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을 심의하는 와중에 행정처마저도 제대로 된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고 또한 대한변협의 검토의견은 오지도 않았습시다.

적어도 우리가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심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 검찰, 행정처, 대한변협과 같은 중요한 전문가 집단에서 검토의견이 다 와서 우리가 충실히 검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추가로 먼저 이 법률 검토 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공청회를 비롯해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처에서는 언제까지 의견 검토가 가능하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제가 여기서 대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오늘 6시 50분에 저희가 이메일로 전문위원님께 보내드렸고요, 정식 공문 접수는 정식으로 공문 접수하라고 그래서 24시에 했고……

○유상범 위원 그것 말고……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다음에 이것 검토

는……

○유상범 위원 전체 검토를 좀 충실하게, 지금 눈에 띄는 것만 검토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내시는 것은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지만 언제까지 한다고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충분하게 TF를 구성하거나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내일 어쨌거나 회의를 말씀하셨으니까…… 법무부차관이 오늘 나와서 ‘나는 검찰과 의견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차관이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니 결국은 저희 위원들 몇몇이서 검찰 국장에게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검 차장이 내일은 출석을 해서 검찰과 관련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검 차장 출석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게 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유상범 위원 대통령께서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말씀이 있으시니까 총장이 의견 진술할 기회를 소위든 다시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내일 같이 논의……

○최강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아까 읽어 드렸는데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자꾸 얘기하시면 내일 오후 2시까지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의 자료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속개하면 위원님들 발언 기회가 오늘 좀 균등

하지 않았더라는 지적이 여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사님하고 논의해서 정하도록……

○**유상범 위원** 제가 보니까 말하다 보면 10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0분이 되면 미리 시간이 10분쯤 됐으니 이 정도에서 먼저 한번 노티스를 주시면 거기서 일단 마무리발언 하시고 다음 기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0시3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관련해서 존경하는 유상범 간사님과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출석하신 김오수 검찰총장님의 의견을 듣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저희 양당 간사가 오늘 국회의장님과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를 참석하신 후에 오후 4시에 속개하여 법률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인분들 계실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역시 유상범 간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총장님 의견 청취까지는 취재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 4시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법률안 심사할 때는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언론인분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김오수 총장님의 의견만 듣고 특별한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오수 검찰총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김용민 위원님,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 검찰총장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것까지는 뭐 법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검찰총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끝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한마디 입장조차 내지 못하거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못

한다는 게 조금 쉽게 납득은 안 갑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된 바로는 검찰총장님이 전체회의 때도 또 의견 진술할 기회를 요구하고 계셔서 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 양당 간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김오수 총장님의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편의 봐주시는 것 같은데……

○**최강욱 위원** 애초부터 합의해서 이런 선례를 만드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적절한 게 아니지요. 무슨 현안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매번 쇼잉을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가 무슨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

○**소위원장 박주민** 최강욱 위원님 그 말씀 제가 무겁게 듣고요.

다만 법사위원장님께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님의 뜻을 또 따르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아서 그냥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김오수** 하여튼 검찰총장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면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사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형태의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직접수사할 수도 없고 사경 송치사건이나 송치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도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둘째, 위헌 소지, 셋째, 송치 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넷째,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의 문제점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총장님, 조금 소리를 크게 해 주시겠어요?

○박형수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검찰총장 김오수 예.

먼저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 대행하면서 직접 제도가 확정되는 데, 확립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18년 6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사이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1년이 넘는 기간의 국회 사개특위 논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제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인해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되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대형 부패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서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행 수사준칙 제59조를 보면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원칙상 경찰에 보완수사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 법안이 목적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선 중간 단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하였고요.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중 그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1/4에 이를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검찰청법에는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해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죄명별로 사건이 검찰과 경찰에 흩어져 제대로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취임한 이후 그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곱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에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간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법률안 및 개정 절차 진행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짜리 자료를 드렸는데요. 제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소법에도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형소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체자로 하고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현행 헌법 제12조, 제16조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큼니다.

또한 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사실 확인 절차는 그 자체로 영장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므로 헌법상 영장청구권 규정에 근거해서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법률안 개정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들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 관련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보완수사 요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제도 도입 전에는 비슷한

것으로 수사지휘가 있었는데 보완수사 요구가 2020년의 수사지휘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를 확인해 보니 보완수사 요구 제도 도입 후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이 6개월을 넘는 것이 전체의 24.4%, 1년이 넘도록 답이 오지 않는 것도 8.9%, 건수로는 3843건이나 됩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 보완수사도 못 하게 되므로 전건 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런 핑퐁식 무한이송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할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봅니다.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들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분의 정확성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절차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법원에서 재판하는 판사님들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해서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중요 범죄 직접수사 폐지 부분입니다.

우리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은 약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패·공직자·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를 수사해 온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범죄들은 과거와 달리 지능화되고 조직화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리로 다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검찰이 돈 많고 힘 센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믿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을 받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검사의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70여 년간 운용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그 어떤 법안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또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 운영이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법안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는 법률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 법률 시행 전에 그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도 제정하고 성폭력 처벌법 등도 개정해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를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검사를 지정해서 피해자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조치를 할 책무를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단지 수사기능을 잃게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법률상의 인권보호 책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안의 다른 주요 문제점도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경찰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로 늘리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현행 20일에서 최대 10일로 줄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자적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입법 방향입니다.

법안은 사법경찰관이 긴급압수수색 후 사후 영장을 발부받을 때 영장청구권자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 해당 조문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법안은 검사가 구속취소나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중대한 입법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위원 총장님!

○검찰총장 김오수 예.

○김용민 위원 저는 총장님이 검찰을 대표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신다길래 오늘날 검찰이 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왔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줄 알았어요.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총장님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지금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는 동안 뭘 했습니까?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제대로 수사도 못 했고 또 뭐 있었습니까.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 징계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도대체 국민들을 왜 여기다 끌어들이고…… 검찰이 언제부터 국민을 걱정했다고 그러니까!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님.

○소위원장 박주민 김용민 위원님, 제가……

○김용민 위원 오로지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돼요.

○전주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위원장 박주민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들이 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전에 양해된 바와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검찰총장 김오수 끝으로 한 말씀만 할 기회를 주시면……

○소위원장 박주민 너무 길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검찰총장 김오수 김용민 위원님 말씀 다 잘 듣고 있고요.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로 소상하게…… 2019년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주시면 법사위원들께 검찰총장으로서 또 2019년 검찰 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 충분히 말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3일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행정부를 대표해서 그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사람이 저입니다. 따라서 저 역시 당시 검찰 개혁을 추진했던 많은 분들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처하고 또 변협에서도 의견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한 검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신데 축조심사를 소위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꼼꼼한 축조심사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민주당이 이 법안을 표결 처리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0년간 이어 온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바꾸실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이 마당에 꼼꼼한 축조심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소위원장님, 제가 어제 말씀 드렸습시다만 오늘 보니까 법무부의 검찰국, 대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에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기관마다 다 반대입니다. 그렇지요, 법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관련 기관들이 다 반대하는 이 법안인데 우리가 최소한 관련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기관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각 학회마다 반대의견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 법안을 지금 축조심사를 해 가지고 ‘반대의견이 있으나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이 법안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입법 독주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최소한의 논의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는 뭔가 보여 주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공청회라도, 뭘 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분명히 이 법안은 워낙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는 법안이고 그 법안 내용이 특히 국민의 권리에 굉장히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거나 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습시다라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없는 상태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하더라도 최소한 공청회를 하나 해 가지고, 뭐 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한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관이 지금 다 반대해요, 오늘 온 기관들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축조심사만 진행하는 것조차도 다소 지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이 일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견만, 반대의견을 다 받아 놓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견도 같이 한번 좀 들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 각 유관 기관—변협단체, 형사소송법학회, 민변, 참여연대 이런 데에서, 하루라도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예,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좀 해 보시지요.

○유상범 위원 논의만 하다 끝날 거예요? 그것도 계속 논의만 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따로 한번 얘기를 하시지요, 간담회나 이런 데서. 지금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진행을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에 앞서 어제하고 또 오늘 새벽까지 논의하셨던 주요 논의 사항이 별지로 배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어제는 총론 부분을 보고드렸었고요. 24쪽부터는 주요 개정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관련입니다.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를 제외하거나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조문대비표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4조 1항 1호는 범죄 수사를 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를 6대 중요 범죄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형배·이수진 의원안 및 공소청 법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검사의 범죄 수사 권한을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민형배·이수진 의원안 및 공소청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입법 목적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검사로 하여금 예외적으로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뒤에 보시면 참고 1이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도 각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박홍근 의원안에서 4조 1항 1호의 2를 보시면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이것은 지금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이것도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라서 수사권이 이미 부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의해서 특별히 새로 수사권이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5쪽에서 박홍근 의원안 및 그 연계법안인 형소법 개정안에서는 검사 수사권의 원칙적 배제를 전제로 검사의 수사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조문 제197조가 형소법 개정안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검사의 수사절차 규정 삭제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박홍근 의원안에 따라 검사의 직무범위에 경찰 등의 직무범죄 수사를 포함하는 경우에 수사의 효율성 및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서 검사가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

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법 4조 1항 1호 다목에서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기관별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 의견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만을 남겨 두되 그 단서에서 ‘수사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및 같이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검사는 수사와 관련하여 영장의 청구,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 등을 가지는데 위와 같이 ‘수사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면 자칫 검사의 위와 같은 수사상 권한 역시 모두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추가 검토를 해서 다른 부분에서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는 표현을 남겨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호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예.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1호의2나 다른 호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예.

법무부 의견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개정안이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한한다고 명시한 것은 어제 우려를 전달한 바와 같이 영장청구권의 취지에 반하고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검사……

○유상범 위원 잘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법무부차관 강성국 검사의 직무에 있어서 개정안이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

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가 적정한 기소권을 행사하고 충실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의 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경찰청 의견을 주실까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경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시지요.

○전주혜 위원 4조 1항 1호에서 ‘범죄 수사를 없앤다’ 이게, 검수완박이 사실 이런 거지요? 범죄 수사를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빼자…… 지금이 개정안 내용, 의원님들 개정안 내용이 다 그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경찰청 차장님,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어제부터 나와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찬성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까 대검의 검찰총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검정 수사권 조정이 지금 시행된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일선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선 변호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면 사건이 오리무중입니다. 수사가 너무 안 된대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건 피해자들이 보겠지요.

아까 검찰총장 진술에 의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6개월이 지나서까지 보완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한 4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통계를?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희가 특히 고소·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보완수사가 있을 때 처리한 평균 통계는 처리일은 한 42일 정도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완수사가 있는 다음에 1년이 경과했는데도 사실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10만 한 6000여 건 정도의 보완수사가……

○전주혜 위원 일단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이 6개월이 넘는 것이 전체 24.4%인데 통계를 인정하세요? 알고 계세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키스를 통해서…… 경찰과 검찰이 같이 연동해서 키스가 작동된 게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 수기 통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장님이 말씀하신 통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고발 사건의 평균 보완수사 처리 요구 사건 기일이 한 42일쯤 걸렸고……

○전주혜 위원 그러면 그 통계가 있으면 통계를 제출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통계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검찰총장의 아까 진술로는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 6개월이 넘는 것이 전체 24.4%, 1년이 넘도록 답이 오지 않는 것도 8.9%, 건수로는 3843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모든 6대 범죄 수사까지 다 그러면 지금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민주당이 우려하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게 두렵다고, 안 된다고 해서 이 법안을 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경찰 공화국이 될 판이에요. 그런데 경찰 공화국이 되는 게 저는 제대로만 수사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보완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수사 경험을 살려서 나눠서 했는데도 지금 안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사건의 지연으로 인해서 고발인들이나 범죄 피해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더 모든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될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많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건 처리기일이 경과된다든지 지연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8.7%가 1년 이상이 경과됐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보완수사 요구한 다음에 한 10만 6000여……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지금 보완수사 통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 정도로 하시고, 통계를 가지고 내일, 다음 회의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주혜 위원 이렇게 모든 수사권한이 경찰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건 결국은 역할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권한이 다 경찰에 오히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사의 지연이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법무부차관님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는 한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수사기일이 지연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필요한 경우에, 지금도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사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해답은 충원이다? 경찰 더 뽑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내부 인력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전주혜 위원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차관께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분리를 하자는 건데 이게 지금 한쪽으로 결국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국가의 수사 총량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 부여하나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개정안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그 부분의 수사를 지금 경찰이 담당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어서 같이 고려돼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위원 또 소신 있는 말씀을 여전히 못 하시네요.

검찰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검찰국장입니다.

지금 이 제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직접 수사 부분이 결국 경찰 쪽으로 넘어가서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고 지금 남아 있는 제도로써는 실효성 없는 보완수사 요구만 남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는 그로 인해서 비대화되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 복안이 함께 논의가 돼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행정처 차장님, 어제 제출하신 의견서 3페이지에 보면 행정처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 못지않게 분리되어 경찰에게 이관되는 수사권에 대한 기관 사이의 견제와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수사력이 경찰에 집중된다고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제시하신 것 맞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맞습니다.

○전주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하실 말씀은 혹시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쪽에서 조금 논의를 할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하고 경찰한테 다 이렇게 몰아주게 되면 그러면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수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공백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그런데 경찰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보여지면 검찰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좀 잘 안 되면 그러면 송치 명령을 해서 검찰에서 그 사건을 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 두어야만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를 완전히 맡겨 놓는 것에 대한 그런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혜 위원 결국은 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지요. 그래서 서로 좀 견제를 하게……

○전주혜 위원 송치 명령까지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없애는, 개정안 내용은 그런 것이라 지금 그런 것이 오히려 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지요. 그 부분을 삭제한다고 지금 형사소송법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존치를 해야 되는……

○전주혜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감사합니다, 전주혜 위원님. 마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다음부터는 짧게 짧게 좀 했으면 합니다. 한 분이 십몇 분씩 이렇게 하시니까……

○유상범 위원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 뭐 방법이 없네, 짧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소위원장 박주민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예, 저는 가능한 한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아까 통계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검찰에서 하고 있긴 한데요. 실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의 기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불기소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에는 75.8일이 걸렸는데 21년에는 69.8일로 6일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무혐의 처분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일이나 단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사권 조정 이후에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훨씬 더 빨리 조기에 해방되고 있다—무혐의니까 특히—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소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20년에는 69.8일이 걸렸는데 21년에는 71.5일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기소는 한 1.7일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기소에 있어서 그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다거나 수사를 조금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SNS나 휴대폰 등 방대한 전자 데이터들, 전자 증거에 대한 어떤 분석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뭐 어쨌든간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마저 단축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간 불기소는 6일이나 줄었고 기소는 1.7일 정도 늘어났다 이런 통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에 얼마나 더 늦어졌냐, 아니면 지금 변호사들이 체감하는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들은 다시 한번 좀 내부에서 통계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부분도 물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 검찰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 단계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지만 검찰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부분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사 관련된 수사 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를 좀 봤더니요 검찰은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사 관련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보니까 한 800만 원, 팔백만 칠십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절반도 안 되게 쓰고 있는 것이지요. 더 많은 사건의 수사를 하면서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오히려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검찰이 수사함으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났던 것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어떤 이런 현실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내부적으로 보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통계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불송치 사건에서 걸리는 시간이 경찰 자체적으로는 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검사의 처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 일자로 봤을 때 6일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송치 사건 같은 경우에 1.7일 정도가 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게 2020년 2021년, 1년의 변화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2017년도부터 보면 계속 수사 기일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의 기일이 늘고 있는 것은 수사 환경의 변화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다들 좀 우려들을 하시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가능하나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실제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그런 조항이 분명히 붙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가 어떤 경우에는 바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게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또는 특히나 요즘에는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보이스피싱 같은 사건도 그렇고요 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상의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것들이 요즘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인스타나.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외국 기업에 협조 요청을 보내거나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시일이 종종 걸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다 오후에 김오수 검찰총장님이 와서 발언하시면서 했던 통계 수치 관련된 발언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경찰 쪽에서도 좀 그 통계 수치들을 정리해 주

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이수진 위원님이 아까부터 계속 손 들고 계셔서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이수진 위원**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이수진 위원** 검사 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현재 고소·고발 및 인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연간 직접수사 건수가 전체 사건의 1.7%에 불과하다. 맞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이수진 위원**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는 직접수사가 더 줄어서 검사 인지가 3300건, 고소·고발 사건 7300건, 합쳐서 1만 건 정도.

그런데 경찰은 매년 154만 건에서 181만 건의 사건을 수사해요. 여기다가 1만 건 더 추가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 처리 역량에 큰 영향을 줄까요? 그러지는 않겠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사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사건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 분야 사건, 지금 6대 범죄 사건은 전문 분야별로 수사기관을 그렇게 조직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은 줄고 경찰 업무량은 늘었는데 경찰·검찰 간 인력,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안 됐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서 경찰 업무량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전혀 확충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경찰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희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수진 위원**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장기 사건이 경찰만 증가합니까? 검사도 장기 사건 증가하고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통계에 나오고 있어요. 계속 증가합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사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행정처 차장님께서 수사지휘를 해야만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협력 보완 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개정안이 그걸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는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고 수사를 하는 이유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지요. 얼마든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서 수사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관련 조항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은 수사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때 검사는 준사법기관이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견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 즉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라는 게 헌법 정신이지 이게 마치 경찰이 직접수사하면 안 되고 검사가 직접수사를 해서 반드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어떻게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어떻게 전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잠깐만,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래도 이걸 자세히 들어야지 대답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이수진 위원**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왜 들어요! 질문했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질문하건 안 하건 이게……

○**이수진 위원** 질문 안 했는데 왜 들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해야 듣는 거지요. 왜 저한테 그런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맞지요? 질문도 안 했는데 왜 말을 하게 합니까?

○**유상범 위원** 질문을 안 들을 거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다투지 마시고요.

○**유상범 위원** 예, 알았어요.

○**소위원장 박주민** 박형수 위원님 얘기해 주시지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 기회를 줘도 안 됩니까? 그것도 이수진 위원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까?

○**이수진 위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박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박홍근 의원안에 보면 ‘검사의 직무’ 해서 1조 1호를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하고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박형수 위원** 우리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보면 ‘체포·구속·압수·수색할 때는 검사의 영장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영장 신청.

○**박형수 위원** 체포·구속·압수·수색은 수사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 보면 헌법재판소……

○**박형수 위원** 아니, 뭐 그걸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들이밀어야지 답할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그래도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은 단답형이에요. 간단해요.

체포·구속·압수·수색이 수사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보존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수사예요, 아니예요? 그렇게 답을 어렵게 합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그런 부분에서 수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수사지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뭐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아니라는…… 단순히……

○**박형수 위원** 법무부차관님!

아니, 이게 압수·수색이 수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데 그걸 ‘수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법무부차관이 전문가입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아니,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석상 말씀드린 겁니다.

○박형수 위원 이거는 재판입니까, 그러면?

○법무부차관 강성국 방금 말씀…… 수사의 정의가 나와 있어서……

○박형수 위원 이건 수사잖아요. 이게 수사인데 1호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헌법하고 지금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헌법 제12조 3항에 되어 있는 체포·압수·수색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영장을 제외한 수사는 제외한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정확한 법이 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 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명백히 규정하려면 그렇게 자세하게 규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 법이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수사를 배제하는 규정을 잘못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박형수 위원 일단 검찰의 수사, 검사의 수사가 전면 박탈되고 경찰이 그걸 하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건 맞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게 커진 경찰권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통제의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수단은 안 물어봤는데요? 수단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버려 두어야 됩니까, 사법적 통제를 해야 됩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지금 있는 수단으로서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또 어떤 사법적 통제를 더 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런 것들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답변하는 것까지 제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자, 경찰의 권한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를 하는 방법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지요. 그다음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사지휘권도 있고 검찰 보완수사권도 형식상으로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사지휘권을 없애 버렸어요. 지난번 소송법에서 없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박형수 위원 지난번에 수사지휘권 자체 조항을 없앴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다른 통제 장치는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박형수 위원 수사지휘권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거참……

그 수사지휘권을 없앤 상태에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없애 버리면서도 대체 뭘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합니까? 아까 얘기한 무슨 체임 요구권이나 교체 요구권 이런 걸로 합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

○박형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경찰관들에 블라인드 조사를 한 결과 검수완박이라는 소위 이 법률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70~80%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 차장님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선 경찰관들로서는 이 수사지휘권 없어지고 그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도 없어져 버리면 경찰이 그 모든 업무를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선 경찰관들은 지금도 검사의 수사 요구권 때문에, 수사 요구한 상황 때문에 업무가 훨씬 많아서 힘든데 보완수사하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해 버리면 경찰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통계는 블라인드에서 한 3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 전체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을 조사한 바는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형수 위원** 통계 수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지는데 그 권한을 통제할 만한 장치인 수사지휘권도 없고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경찰의 그런 권한이 비대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사법적 통제인 법원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수사지휘권도 없어지고 검찰 직접 보완수사권도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통계가 더 필요한지 여부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완수사 요구 또 그리고 거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체임용이라든지 또는 직무배제 또는 징계의결 이것만으로…… 지금 사실 1년 동안 지나면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얘기한 그런 것들은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행사된 적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현실상.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 또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서 경찰한테 나쁘다거나 무슨 해악이 되는 게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렇지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검찰이 2차 보완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혹시나 경찰이 놓쳤던 부분, 미진

했던 부분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 부분에서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제도인 건 맞지요? 경찰로서 권한이 침해가 된다거나 손해가 난다거나 아무런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다만 지난번에 법안을 개정할 때도 그런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마치 그건 선이고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것은 악이다라는 규정을 해 놓으면 지금 같은 그런 논리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박형수 위원** 현대의 지금 국가에서 영미법계든 대륙법계든 필요에 따라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직접수사하는 사람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허용해 주는 것이고. 또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검찰이 많이 수사를 하면 또 그 폐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마치 수사·기소는 절대 선이고 수사·기소를 같이 행사를 하면 나쁘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면 그런 말씀이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이미 케케묵고 낡은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체도를 논의하는 초점은 뭐여야 되냐 하면 이런 체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기관 간에도 그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이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면 그 기능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그거를 ‘수사·기소 분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충분히……

○**박형수 위원** 일단은 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찰에 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저희들 업무상 그렇습

니다.

○박형수 위원 됐습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박형수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박형수 위원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어서 차장님 하나 좀 여쭙볼게요.

박홍근 의원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야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봐서 사법경찰관 자격으로 다시 검사한테 영장을 청구하는, 신청하는 이런 회한한 결과가 되는데, 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났던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부분이 조문상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면, 사법경찰관으로 보면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검사는 사법경찰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법률상으로 개정안에 의하면. 그러면 그 검찰청에 있는 다른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굉장히 이상합니다.

○박형수 위원 이렇게 회한한 법률을 우리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차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차장님 그 답변으로 이제 질문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시작하기 전에—답변을 요구하신 거 아니지요?—6시 되면 정회를 하기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20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장호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4조가 지금 논의가……

○소위원장 박주민 그때 박형수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냥 끝났지요?

○유상범 위원 논의가 정리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기다리는 중인가요?

○소위원장 박주민 말씀하시면 됩니다.

○유상범 위원 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수사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수사라는 게? 범죄 혐의를 입증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인의 확인 또 발견 및 증거의 발견·수집 행위 일체를 수사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하는데 그 수사는 결국은 소추를 위한 준비 단계 행위고 그 준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뭐 영장부터 또 내사, 조사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수사라고 정의를 하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헌법 12조 3항, 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는 이 규정, 즉 검사에게 체포·구금 또는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영장주의 규정…… 그러면 이 규정 자체의 행위를 보면 영장청구권이라는 검사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가 수사행위로서의 하나의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수사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수사 전체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규정돼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규정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헌법 규정을 그 규정이 있는 그대로 문리해석을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한 이 규정에 대해서 그것이 명백하게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을…… 뭐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설명과 이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이 검사의 수사권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행위다 이것과는 좀 다른 설명이거든요.

제 말은, 즉 영장청구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영장청구권이라는 규정이 도출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학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좀 다수인 것 같은데 또 반대적으로 반대론을 펴는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도 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반대론을 펴는 논거는 어떤 건가요? 그것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영장청구권이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지요, 반대론은?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혹시 반대론이 어떤 이유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반대론이 이런 거더라고요. 법학전문대학 교수님인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영장청구권에 자동으로 수사권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하는 국가도 있는데 소추의 영역이 수사와 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유상범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실증적으로 확인을 해 봅시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 또 미국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영미법계 아니겠어요? 영미법계에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인정이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영미법계에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수사라는 건 그냥 경찰에서 다 하였던데 경찰의 수사가 너무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법률가인

검사가 좀 통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통제를 받게 하였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특별수사청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특별수사청을 설치했다는 부분은 설명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에게 소위 법원에 영장신청권이 인정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검사에게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수사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장신청권도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영장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법 통제의 기능을 한다는 규정이라는 것은 영장청구권으로서의 어떤 법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지 영장청구권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고 그것이 또 문리적 해석도 맞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 점을 한번 물어볼게요. 1962년에 결국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됐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그 규정이 지금까지 헌법 규정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의 헌법, 그러니까 1차에서 4차의 헌법에 보면 그 당시에는 영장청구권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검사 및 사법경찰한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수사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수사기관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 당시 수사기관이 검찰 및 사법경찰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2개의 기관에게 영장청구권이 주어진 이유는 결국은 간단하게 본질적으로 그쪽이 수사권을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 주어진 겁니다, 양 기관이.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유상범 위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은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냐, 없냐를 논할 필요도 없이 그건 당연히 수사를 전제로 해서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체포·구금·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수사 행위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지금 이 4조에서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다만 수사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한 자체가 사실은 12조 3항이나 16조에서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과는 모순되는 사실상 위헌적인 규정이다 이런 논리적으로 출이 가능하고 지금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장도 굉장히 타당한 주장 아니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자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위원** 말씀하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리고 위헌이라는 주장 중에 좀 유력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정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수사를 오로지 검사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검사가 수사한다는 것은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는 헌법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우리가 4조 규정의 개정안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1차적으로 위헌성 여부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떠나서.

그래서 먼저 이 위헌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검토와 동시에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의견 또 위헌이 아니더라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도…… 우리가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이고 학자들 사이에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위헌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주장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우리가 수사를 제외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검사가 하는 직접수사가 있고 또 기존 법제에서 인정되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가 있고 이 두 가지 수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행정처 차장님은 계속 고생하셨으니까 법무부 차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수사가 있고 보완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유상범 위원**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겁니다.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직접수사는 우리가 6대 범죄로 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조정됐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규정에 의하면 6대 범죄는 검사가 직접수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6대 범죄로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피곤하니까 말이 자꾸 힘들어지네, 나도.

6대 범죄를 나중에, 3개월 뒤에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하면 관련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라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해 왔었던 보완수사 규정을 이 규정으로 못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이게 혐의가 없다고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결국은, 그 이의신청에 따라서 검사가 지금까지 다시 재검토 하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지금 이 규정에 의하면 그걸 못 하고 결국 검사가 이의신청을 해도 그냥 보완수사를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또 그 사건을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이 문제, 이게 바로 지금 새로운 개정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에 의하면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을 해 가지고 경찰이 수사, 사건 처리의 지연이 발생하는 그 문제랑 직결되는 부분인데……

차관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조사 받는 경찰관이,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이의신청을 했더니 다시 그 경찰관한테 그 사건이 내려와서 재조사를 받는 경우랑 그 사건을 검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조사하는 경우랑 국민들은 어떤 걸 원하겠어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뭐 모든 케이스가 다 일관되게 해결 프로세스가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경찰이 스스로의 결정을 반복하기 쉽지 않거나 또

는 새로운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거나 사실관계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은 그런 절차를 원하지는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 주기를 희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 직접수사권을, 그러니까 보완수사 요구를 만약에 이렇게 개정한다면 최소한 공판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기속력을 부여하는 그런 실효성을 담보하는 측면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관님은 또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시네요. 그러니까 공판 단계에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보완수사 요구는 지금과 같이 단순한 요구 건이 아니라 기속력 있는 요구 건이 돼야만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또 그런 의견을 내셨네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이게 기소까지 된 마당에서는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소유지가 돼야 되니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어느 정도 기속력이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상범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지금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기본적으로는 직접수사, 검찰에 의한 직접수사로 인한 확증편향성, 그러니까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공정성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돼 가지고 지금 사실은 결국 이 직접수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 논거로 나왔습니다만 99%의 사건은 형사부 사건이잖아요. 형사부 사건인데 지금까지 바뀐 규정에 의해서 약 10% 정도가 보완수사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10%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평풍식 사건 떠넘기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면 이제 100% 보완수사란 말이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고 그냥…… 그건 수사를 못 하니까 기소하는 사건도 보완할 게 있으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보완 안 하고 다시 다 내려요. 그러면 사실상 100%의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건처리부터 사건처리의 양, 경찰에게 주어진 사건처리의 양, 사건처리 속도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그럴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제도, 보완수사 요구 원칙이라는 이 부분을 적용하지만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사실상 엄청난 사건들이, 모든 사건들이 경찰에게 다 쏠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형사부 사건에서 경찰 단계를 거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기소되고 불기소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피해구제를 받고 또는 억울한 고소는 명확히 규명이 되고 이런 처리 절차를 다 겪잖아요.

그런데 이 절차가 완전하게 지금 새롭게 모든 게 경찰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일반 99%의 사건, 즉 200만 건 중의 190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거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앞으로 이렇게 되면 항고는 가능합니까?

검찰국장님!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예.

○**유상범 위원** 지금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해 가지고 결국은 경찰이 그대로 처리해서 불송치 결정에 따라서 무혐의를 했다고 칩시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서 사건처리를 경찰에 내리면,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건처리가 무혐의로 처분될 수밖에 없잖아요?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예.

○**유상범 위원** 그렇게 되면 고소·고발한 피해자가 지금까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항고, 또 재항고의 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데 이 제도 가능합니까, 이용하는 것이?

○**법무부검찰국장 구자현** 항고, 재정신청 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일부 차단되고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4월 15일자 발의 법안의 내용입니다.

○**유상범 위원**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그런데 이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중간에 끊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네요.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지금 이 규정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제도의 변화가 저희가 예상되고 있고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우리 헌법상 재판은 법원의 판사만 할 수 있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최기상 위원 그런데 법원의 판사가 가령 민사사건 같으면 원고가 소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판사가 알아서 재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최기상 위원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할 수 없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최기상 위원 결국 판사도 민사사건 같으면 원고가 소를 제기해야 되고 형사사건 같으면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가 독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아는데 내가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건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지금 검사가 헌법상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헌법에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경찰이 신청해야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헌법상 꼭 위헌인가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런데 헌법에는 지금 다른 아무런 제한이나 수식어가 없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검사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제가 여쭙보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야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여쭙보는 겁니다.

검사의 역할이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영장 신청이 됐을 때 그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적법한지 엄격히 심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만 제대로 행사해도 우리 헌법상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검사들이 우리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쭙보는 것인데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검사가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영장 신청을 함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검사가 독자적으로, 즉 경찰로부터의 영장 신청이 없을 때 독자적으로 영장청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이 꼭 위헌으로 연결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차장님께 여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입니다.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판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헌법 이 부분의 해석을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킨다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사에게 헌법에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를 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그러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수사권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그런 문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많은 수사를 하고 계시고 고소·고발도 많이 들어와서 처리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평가가 어떻습니까? 수사하는 사건 그리고 고소·고발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사로서 해결해야 될 사건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너무 과잉된 수사, 과잉된 고소·고발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진교훈** 일단 고소·고발 사건만 보면 1년에 약 40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의 24% 정도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기소로 처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불송치의견이 되거나 과거 같으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민사 사건화될 것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기상 위원** 압수수색 관련한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기억하십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0% 내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기각률이?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 수사 현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고소·고발 사건도 줄이고 수사로서 해결되는 사건의 양을 줄이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굳이 외국과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본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가 한 16배—사람 수에 비교하면요—그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사사건의 형사화가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 등을 통해서 무조건 수리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사사건이 분명한 사건은 형사로 접수하지 않는 그런 선별적인 입건 수리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도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경찰 단계에서 사건처리가 좀 지연되거나 사건처리 내용에 관한 불만 이런 부분도 조금 줄어들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 구체적인 개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

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논의를 하고 있고 일부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전주혜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좀 여쭙볼 텐데요.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삭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또 관련법을 보면,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정위와 금융위는 지금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데 또 수사는 지금 검찰이 못 하는 거니까 경찰에 이관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다, 그리고 관련 법 규정까지 같이 다 한꺼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하면 고소·고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법경찰관만 받을 수 있고요 검사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은 검찰총장은 검사인데 그러면 형사소송법하고 그게 왜 달라지는 거냐 하는 의문이 첫째로 생기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고발을 받으면 수사를 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법경찰관에게 그대로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법률 간에 서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하나 더 여쭙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다 보니까 고소나 고발도 지금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정안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을 제한한다…… 국민들, 범죄 피해자로서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싶다,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수사기관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좀 위험적이지 않나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게 타당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위험이라고까지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약간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부적절하지만 위험까지는 아니냐?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위험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전주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소·고발을 어차피 경찰관에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처에서는 추가 검토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수사는 무조건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이첩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불송치 결정을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한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겠지요.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보고 보완수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을 했던 사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불송치 결정을 한 건데, 무혐의를 한 건데 그것을 보완하라고 하니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 그다음에 고소·고발을 한 사람은 믿음이 안 가겠지요. 믿음이 안 갈 거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검사는 자기가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법경찰관이 가지고 있다가 또 불송치 결정을 하면 무한 반복이 돼서 계속 시간만 가고 매듭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하는 것

이 좀 불충분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어도 기존에 있는 조문인 송치명령 그 조문을 남겨 두어서 검사가 직접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만 그 사건이 비로소 종결이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법원에도 영향이 있는데……

○전주혜 위원 법원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검사가 ‘그래도 나는 이것은 기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완수사를 해서 뭔가 입증할 것 그것을, 이것은 이런 점이 문제가 있으니까 입증할 만한 것을 보완해서 유죄의 증거로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죄판결이 나겠지요. 그러면 무죄판결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은 온갖 비난이 그 판결한 판사한테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판사는 가만히 있으면서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것을 재판할 따름인데 뭔가 보완수사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증거가 좀 더, 저 부분은 조사를 하고 싶은데’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죄판결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경찰에 대한 원망 그다음에는 검사에 대한 원망으로 되다가 나중에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원망, 법원에 대한 원망, 그래서 법원의 신뢰 저하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송치요구권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 최강욱 위원님 발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강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수진 위원님.

○최강욱 위원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최강욱 위원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이 법 시행 이후의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들었습니다.

○**최강욱 위원** 이게 사실은 처음 제기된 게 아니라 6대 범죄를 가지고 수사권 조정할 때도 나왔던 얘가지요, 무한 반복이라는 문제점?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평소의 법원행정처의 태도와는 다르게 마치 사실관계를 다 경험하고 꿰뚫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지금 확신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와 달리. 그것은 제가 차차 왜 그런지 여쭙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렇게 검사가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그냥 그것을 방치하도록 돼 있었나요, 현재 우리 제도가?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욱 위원** 어떻게 돼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 입장에서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사의 여건이나 능력상 그것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경의 입장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것을 사경이 따르지 않았을 때는 직무 배제라든지 징계의결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그것이 직무상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강욱 위원**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보완수사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마치 피해자와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주는 것처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경찰은 그러면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민생에 피해가 가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아마 그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면 기존의 검찰의 역량이나 업무 관행으로 볼 때 절대 그냥 있지 않을 것 같고, 충분히 여론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의 보완수사의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하니까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완수사를 지금 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검사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현 제도상으로는?

○**경찰청차장 진교훈** 검사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검찰에 이미 송치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최강욱 위원** 검찰이 자기가 사소한 부분도 전혀 보완할 수 없게 돼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현재는 당연히 보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현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현재는 당연히 보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지금 보완수사를 시키니까 자꾸 사건이 지연되고 있고 어찌고 한나라는 점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 이것은 검찰이 아주 단순하게 가볍게 보완할 수 있는 건데도 기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내려보낸다는 어떤 불만이나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는 없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본래 수사 준칙상으로 수사기관 간의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것을 경찰이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의 경우에라도?

○**경찰청차장 진교훈**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지금까지 협의회 자체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 요청을 하는데 안 열리는 겁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 보완수사로 꼭 돌리지 않아도 될 일을 그저 기계적

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기관 협의체 같은 것도 사실상 외면하면서 계속 일방적인 위치에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비판도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내부에서 수사 실무자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기존에 경찰관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건 없건 간에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현실적으로 그 경찰관이 조직 내에서 능력이나 신망을 인정받아서, 특히 경찰 같은 계급조직하에서 현실적으로 승진하는 데 당연히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승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인사상에 그게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 요구를 자주 받는 경찰관이 있을 경우에?

○**경찰청차장 진교훈** 아무래도 부담은 가지실 것 같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최강욱 위원** 정당한 이유가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했다라는 이유로 체임 요구를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되면 그것 역시 본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것 같고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최강욱 위원** 지금 현재 실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한테 가는 게, 수사관한테 가는 게 맞겠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러면 그 수사관이 몇 번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더라도 계속 그 사람이 끝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지금 단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강욱 위원** 뭐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수사 자체를, 수사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기존의 수사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관 교체까지 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일단 우선은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한 사람한테 보완하라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안 한 사람한테 보완해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 조직에서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담당 수사관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볼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보완수사가 왔는지, 왜 그런지?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기 직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지휘 계통에서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기도 하고……

○**최강욱 위원** 그러면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수사관을?

○**경찰청차장 진교훈** 민원인의 수사관에 대한 교체 요청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의 수사가 너무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할 경우에는 민원인은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경찰 수사감독자가 수사 문제에 있어서 수사심사관이라든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청문감사관한테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해 가지고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까지 내려왔다, 이 사람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 이런 거 감찰 계통이나 청문감사관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끝 맵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감찰조사나 확인을 진행합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합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지금 보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검찰이 지배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다 보니 기본적으로 거기에 젖어 있고 너무 익숙해져 있고.

특히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부터 형사소송의 주제나 심지어 형사소송 체계의 왕으로 검찰을 간주하면서 써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완전한 분리와 또 필요시에 상호 간의 협력 또 권력의 분산에 따른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서 오는 오해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지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경찰의 업보인 면이 있지요. 그동안에 워낙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일정 부분에 조사 기록을 남긴 다음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검찰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임무를 그냥 방기한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타의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정리될 수 있는 제도들이 다 마련돼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경찰은 그저 검사가 지시하면 자기가 마음먹고 안 해 버려도 되고, 그 뭉개 버리는 경찰에 대해서는 조직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경찰은 사건을 암장하기에 익숙한 조직이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제대로 하지 않는 게으른 조직이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무능한 조직이거나 이런 것들로 지금 전제되는 상황에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스스로 성찰하실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현장 경찰관들의 모임인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나온 어떤 논평 내지는 의견 같은 것을 봤는데, 그 회장이라는 분이 뭔가를 쓰서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음을 울린다라는 감동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데요.

검찰의 문제가 현재 지금 제기돼 가지고 검찰 개혁의 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문

제이고, 그 집중된 권한 가운데 현대사회 진행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진행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주제로 늘 얘기돼 왔던 검찰 권한의 분산 내지는 재조정 내지는 축소 이런 것들이 주로 수사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기소편의주의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 건 전적으로 검찰에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경찰의 문제를 갖다 붙여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계속 수십년 동안 진행돼 왔어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현장 경찰관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본인들의 견해를 주장하고자 집단행동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잘못이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모욕을 주는 일은 삼가라’라는 절절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뇌부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이 혹은 의견이 없이 그냥 방치하고 계신 건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경찰청에서는 어쨌든 입법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논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가 취해 온 기본 모습이고 형태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지금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경찰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고 수뇌부가 무능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입법 정책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논의와 판단을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견을 개진한다, 이것이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조직과 공직자들이 보여 온 기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찰은 집단행동을 무시로 반복하고, 만약에 다른 공무원 조직에서 그런 행동을 했으면 득달같이 나서서 인지하고 입건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 사례가 또 많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그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는 바가 없이 그저 본인들의 관점에서, 그것도 지극히 본인들의 이익에 경도된 관점에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심지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집중된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지…… 그간에 수십년 동안 쌓여 왔던 이 특권과 반칙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린 바가 있고.

또 하나, 수사제도가 이 기소와 관련된 제도 또 영장 청구의 주체, 영장제도와 관련된 것들이 역사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업보 중에 최초의 업보는 친일경찰, 그러니까 제헌국회에서부터 쭉 걱정되고 얘기돼 왔던 일제 순사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찰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원죄처럼 이것이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아 있는 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래서 이런 경찰을 그냥 뒤서는 안 된다, 일제 순사의 기억을 우리가 잊어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한테 한시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아 줘야 된다, 이것이 제헌국회 1의 논의 아니었겠습니까?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게 일제 치하의 경찰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식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본인들이 수사의 주재자는커녕 종속된 기관으로서, 하급기관으로서 취급받아 왔던 시절이 당시에 일제 35년을 거치면서 쌓아 왔던 이미지이고 국민들이 경찰의 권력, 경찰 권력의 오남용 또 경찰관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는 데 필요한 세월이었던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35년의 세월을 겪고 나서 입법자들이 결단을 한 게 지금의 경찰을 그냥 뒤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에 일정 기간 동안 권한을 모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적인 결단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차장 진교훈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지금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가

검사가 지배하는 형사사법의 공기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보여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술하게 많은 사례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그리고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와 비슷하게 결국 나중에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잘못된 점이 확인되더라도 국가는 시효 소멸을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피어린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온 사법 피해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고, 또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의 범죄나 검사 자체의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의 공정성이 심각한 의문을 받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것이 겨우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에 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라는 검찰총장의 사과로 한 번은 매듭지어지기를 바랐는데 그 사과가 이어진 직후에도 또 보복수사를 감행하고 그 결과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성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저 모여서 우리 이익을 수호하겠다고, 밥그릇 지키겠다고 집단행동을 하면서 과거에는 하지도 않았던 국회 출석을 요청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 입법 심사에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과연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이 형사사법제도의 재설계를 통해서 70년 동안 쌓여 있었던 이 잘못이 35년 동안 내지는 40년 동안 경찰이 저질렀던 잘못에 비해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기간이 짧길래 경찰은 여전히 무능과 불신과 암장을 거듭하는 조직으로 취급받아야 하고 검찰은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관인 것처럼 전제된 하에서 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예.

○최강욱 위원 아주 마음먹고 나오신 것 같은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새겨 보시고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거에 보였던 법원 행정처의 모습이 아닙니다.

방금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영장제도를 어찌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검사를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소개하신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혹시 1997년 3월 27일에 선고된 그 결

정례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잠깐만요.

아닙니다. 2021년 1월 28일 2020헌마264, 681 사건, 전원재판부 사건입니다.

○**최강욱 위원** 그 재판부에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전문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강욱 위원** 제가 지금 전문을 보면서 그 부분을 읽어 드린 건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하여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최강욱 위원** 그런데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든가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요. 동의는 합니 다만 그 결정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

○**최강욱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헌법적인 일반 이론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제가 지금 전문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존의 법원행정처의 태도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또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론이 헌법상의 수사권을 행사해야 할, 당연히 수사권을 보유해야 할 기관으로 검찰을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

○**최강욱 위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아니, 제가 말씀한 건 아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있는 문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강욱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상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쭙보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러한 견해……

○**최강욱 위원** 헌법상에 수사권의 주체로서 당

연히 검사가 전제되고 검사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게 있냐고요,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그렇게 주장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강욱 위원** 헌법에 명문화돼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 자꾸, 제가 물어보면 말의 취지를 아시면서 지난번부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있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답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제로 제가 과거의 법원행정처 태도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입장을 지금 일관하면서……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좀 제지해 주시지요. 이것은 너무 심합니다.

○**김용민 위원** 답변 태도가 안 좋잖아요.

○**최강욱 위원** 지금 질문 중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형두** 저는 헌법 교수님의 견해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주혜 위원** 10분 넘었어요. 좀 줄여 주세요.

○**유상범 위원** 답변 태도가 안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행정부처에서 자기 입장을 밝힌 거고……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유상범 위원님……

○**김용민 위원** 아니, 국민의힘은 법무부장관에게 답변 태도를 한두 번 지적했어요?

(장내 소란)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일단 최강욱 위원님이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전주혜 위원** 무제한토론하는 거예요? 지금 몇분을 얘기합니까, 몇 분을?

○**김용민 위원** 어제부터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유상범 위원** 아니, 어차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법무부차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나요?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최강욱 위원님 질의……

전주혜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전주혜 위원** 예의를 좀 지켜서 물어보세요.

○**최강욱 위원** 전주혜 위원님,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몇 분을 얘기하냐고?

○**전주혜 위원** 어디서 지금 삿대질이에요? 어디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지금?

○최강욱 위원 지금 몇 분씩 얘기했는지 시간 재 봐요?

○전주혜 위원 재 보세요.

○최강욱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정말 어떻게……

○유상범 위원 이 사람들이라니!

○박형수 위원 이 사람들이라니.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최강욱 위원 사람 아니면 뭐야, 그러면! 적반하장도 어느 정도지 지금 몇 분씩을 얘기하고 나서 지금 몇 분을 얘기하냐고 나한테 물어봐?

○박형수 위원 어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최강욱 위원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지금? 안 그랬습니까!

○전주혜 위원 관계기관에다 예의를 지키시라고요.

○최강욱 위원 이거 타이머 정해 놓고 하자고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소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주혜 위원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최강욱 위원 이거 보세요. 매사에 그렇게 억지를 부리면……

○전주혜 위원 누가 억지를 부려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위원 여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전주혜 위원 예의를 좀 지켜서 물어봐 주시라고요.

○최강욱 위원 예의를 누가 먼저 어겼는데!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제지를 하세요. 누구는 소리를 못 질러서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전주혜 위원 어디서 샷대질을 하고 그래?

○이수진 위원 어디서든 뭘 어디서야.

○김용민 위원 왜 발언을 방해해요? 발언을 왜 방해해요, 그러면?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선……

○최강욱 위원 아니, 본인들 발언하는 거는 무제한으로 아무렇게나 하고……

○김용민 위원 아니, 예의 없이 발언을 방해해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수진 위원 발언 중 방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자, 우선……

○전주혜 위원 도가 지나치니까 그렇지요.

○이수진 위원 누가 도가 지나칩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용민 위원 발언 방해가 도가 지나치지요!

○최강욱 위원 누구는 적당해서 가만히 있었는지 알아요?

○소위원장 박주민 잠시만요.

우선 발언들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길게 해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든 발언을 좀 짧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누구 한 분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강욱 위원님 질의를 일단 하시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질의하실 때 출석하신 정부 부처 또는 관계기관 분들에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최강욱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늘 법률적인 견해의 대립이나 다수설과 소수설의 대립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균형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입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입장에 경도되어서 굳이 다른 견해나 또 다른 상황이나 다른 가정을 무시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대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법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법감정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수사나 공소 제기의 주체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입법자의 몫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지금 여태 벌어지고 있는, 그간에 벌어졌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역사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회의 과정에서 수사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인권침해적 성격 때문에 헌법에 영장주의가 도입이 되고 그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로서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신분상의 독립을 받으면서 별도의 권력으로서 존재하고 그 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 법관이 제시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을 넘어서서 검사에게 당연히 수사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전제된 조항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위헌론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도 어렵고 역사적으로 영장주의가 도입된 취지와도 맞지 않고 애초에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부터 검사를 당연한 수사지휘권의 주체로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형사소송법의 개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죽 이어져 온 내용들을 완전히 새로운 형사소송체계를 지금 그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위헌론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분명히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수진 위원 질의하기로 했는데요.

○소위원장 박주민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이수진 위원 제가 하기로 했어요.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들어 줘야지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박형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는 질의를 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주민 질의는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수진 위원 저 먼저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범 위원 여야, 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진행발언이잖아, 그건.

○이수진 위원 아니, 그래도 순서가……

○소위원장 박주민 아까는 발언 신청을 최강욱 위원님하고 이수진 위원님만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청한 위원님……

○박형수 위원 먼저 하시라고,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박형수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고……

○소위원장 박주민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이수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전주혜 위원 각자 생각들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 제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기관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처 차장도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행정처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인데 밀어붙이고 또한 ‘특정한 입장에 경도가 되어 있다’는, 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법원을 모욕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최소한 관계 기관에 대한 존중은 하면서 이 회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예, 최강욱 위원님 짧게 좀……

○최강욱 위원 그래요.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비판 의식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여태껏 그렇게 하면서 회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편파적이지 않고 옹호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본인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라고요? 그것 자체는 편파적인 견해가 아닌 것인지 각자 좀 자문해 가면서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최강욱 위원께서 하시는 태도가 굉장히 불편해요. 각자 자문하러니요? 지금 여기에서 누구에게 하는 애갑니까?

○**최강욱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계속 토론하실 겁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지금 토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최강욱 위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태도가 뭐냐 하면 갑자기 야당 위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듯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최강욱 위원**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언제 제가 너네들이 잘못했다 그랬습니까?

○**유상범 위원** 말꼬리 잡지 마시고…… 말장난 하는 거예요, 지금?

○**최강욱 위원** 법원행정처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왜 야당에 대한 잘못 지적입니까? 그렇게 유착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무슨 자격지심이 그렇게 있으신 거예요?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일 뿐입니다.

○**전주혜 위원** 그렇게 몰아붙여서 채널A 사건 검언유착했습니까?

○**박형수 위원** 질의합니다.

○**최강욱 위원** 이것 보십시오.

검언유착을 내가 했어요? 내가 피해자지.

○**전주혜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최강욱 위원** 뭐 앞뒤도 모르고……

○**전주혜 위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강욱 위원** 당신들이 써야 될 말은 권언유착이에요. 검언유착을 나한테 갖다 붙이면서 내가 했다고? 피해자, 가해자도 몰라, 어떻게? 법률가라는 사람이……

○**전주혜 위원** 유착이라는 말을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써요? 누가 유착했습니까?

○**소위원장 박주민** 여러분들, 잠시 정회를 하다가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회의중지)

(22시27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10시까지 하기로 했고 그 전에 조금 일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사이에 좀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서 회의를 오늘은 마치고 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유상범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주민** 예.

○**유상범 위원** 오늘 벌어진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 사이에 사실은 반말과 고성 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최강욱 위원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만 저희도 내일 예정돼 있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내일 2시 전까지 최강욱 위원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고성이 오가고 반말하는 것들은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법사위에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위원의 발언에 먼저 끼어들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법사위에서 반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저랑 김남국 위원일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툭 하면 저희에게 반말을 많이 하셨지요, 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인지 어쩐지 몰라도. 그것 뭐 얼마나 저희가 문제 제기했습니까?

사실은 상호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번 기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 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사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먼저 발언에 끼어들어서 이 사단을 만들게 된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일단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 품격을 다 같이 떨어뜨리는 일이고 위원회로서도 정말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데에는 다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선후를 따지자라면 누가 어떻게 시작해서

누가 어떻게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온 발언 중에서 전주혜 위원한테, 동료 위원한테 ‘저게’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은 통상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 또 더더군다나 여성 위원한테 저게라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저게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주민 예.

○이수진 위원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게가 제가 아까 보기에는 전주혜 위원님이라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말한 것 같더라고요.

○유상범 위원 사람한테 저게라는…… 상황을 가지고 ‘저게’라고 합니까?

○이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해서 저게라고 한 것 같아요.

○박형수 위원 그건 녹취록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유상범 위원 자,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까지 다 돼 있으니까 보시면 알 거고요. 저희 입장은 명확히 밝혔고 여성 위원들에게 그와 같이 비속어적 표현을 하면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회의가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상황 변동이 생기거나 하면 미리 출석하실 관계기관 분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는 것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강성국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내일 저희 법무부에서 오후 2시에 변호사 시험 수를 확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주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찰국장이 좀 대참……

○소위원장 박주민 누가요?

○법무부차관 강성국 그래서 다른 분을 대참을 좀 양해를 해……

○소위원장 박주민 내일 알려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강성국 예.

○소위원장 박주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용 민	박 주 민	박 형 수	유 상 범
이 수 진	전 주 혜	최 강 욱	최 기 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장 호
전 문 위 원	허 병 조
전 문 위 원	박 철 호
전 문 위 원	심 정 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 관	강 성 국		
검 찰 국 장	구 자 현		
대검찰청검찰총장	김 오 수		
경 찰 청 차 장	진 교 훈		

○법원측 참석자

법 원 행 정 처 차 장	김 형 두
---------------	-------